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제543호

다. 제출일자: 2023. 2. 6.

라. 회부일자: 2023. 2. 9.

2. 제 안 사 유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2023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위탁사무명: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나. 위탁기간: 3년('23. 4. 1. ~ '26. 3. 31.)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에 위탁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 처리
-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와 관리
- 주민 이용자의 소통체계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
-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마. 시설 개요

- 시설명/소재지: 강남주민편익시설/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 규 모: 연면적 9,716㎡,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다목적체육실, 풋살장 등
- 준공년월: 2002. 1.
- 이용대상: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 주요 시설 사진



위치도



주요 시설 사진(수영장)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3. 1. 17.)

사. 소요예산: 운영비 지원 없음(자립형, 시설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

아.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시설 운영을 통한 효율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
-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검토 의견

1)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02년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동 시설은 연면적 9,716㎡(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다목적체육실 및 풋살장 등으로 활용되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흥사단이 서울시 예산지원이 없는 자립형(시 예산지원 無)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강남주민편익시설 일반 현황>

시설명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치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일원동)
개관연도	2002. 1.
수탁기관	(사)흥사단
민간위탁유형	자립형
위탁기간	'20.4.1.~'23.3.31.
규모(연면적)	9,716㎡(지하 1, 지상 3)
용도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다목적체육실, 풋살장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이용료 할인율	20~80%(프로그램별 상이)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2)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강남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1)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1)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강남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4)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사업은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2023년 3월 31일 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²⁾이 수립된 이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³⁾으로 결론지어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자원순환과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재위탁(공모)	자립	3년	적정(권고)	[권고] - 유사시설 대비 주민이용 저조 원인 분석 후 활성화 방안 마련 - 노후시설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중장기 리모델링 계획 마련 후 예산 편성시 반영

5)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⁴⁾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는 80.71점으로 양호하고,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와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임.

2)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자원순환과-7263, '22.12.6.)

3)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순환과)(조직담당관-760, '23.1.17.)

4)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마포주민편익시설-('22.09., 서울특별시)

- 다만,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코로나19 손실보전금과 시설개선비 추가 지원('20년 100백만원, '21년 60백만원, '22년 19.5백만원)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추경예산확보 등으로 인해 연단위 및 월단위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또한, 본 동의안 의결('23.3.10) 후 재위탁 개시일('23.4.1)까지 남은 기간이 20여 일에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 공모 및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이 최소 2개월임을 고려한다면 현 위탁 기간을 연장⁵⁾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업 개시일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라고 지적받은바⁶⁾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8page (의안번호 353)
- 신규 위탁 개시일이 2023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의결과 일상감사 의뢰, 재위탁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12월 중에 모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12월 15일로 예정된 시의회 의결 일정을 고려한다면 12월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임.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 신규위탁 추진에 문제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현 상황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향후 민간위탁 공모 및 수탁자 선정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임.